

['26년 개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26.7.1.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

□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

* 도입 경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24.7.1.~)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25.1.1.)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26.7.1.~)

□ 지원 요건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허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20일 연속**으로 허용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20일 연속 허용'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기간을 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한 경우를 의미

②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5명 이하)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특정하여 지정* 하여야 함

* 다만, 육아기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또는 장려금)의 대상 근로자를 업무분담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지원금, 워라벨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야 함
- 1명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다수의 동료 근로자가 분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 1명당 분담 근로자 5명까지 지정 가능

③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

- 월력 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지급액을 한도로 1회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과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은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일할 계산하지 않음

구 분	피보험자수	최대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한 업무분담자를 동일 기간 내 2명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지원 제외)

* (예시) A가 육아휴직, B가 배우자 출산휴가 실시, C를 2명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각 지정, 각 60만원씩 120만원을 사업주가 지급(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C의 경우 A 또는 B 중 한 명에 대한 업무분담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60만원 지원 가능

□ 신청 및 지급 방식

-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 **(제출서류)** ①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중복지원 제한

- **다른 법령에 따른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시**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사용을 이유로 타 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유사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 적용례

- **'26.7.1.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

상습체불사업주 지급 제한('26.6.1. 시행)

❖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을 제한

- **(개정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한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를 추가**
- **(적용례)** '26.6.1.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①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을 허용하거나, ②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③업무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붙임1

신설 제도 관련 Q&A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공휴일, 사내 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일 연속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 공휴일, 사내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0일 연속 사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개월에 걸쳐있고, 사업주가 각 월에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경우 지급방식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속해 있는 달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
 - * (예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26.7.13. ~ '26.8.10.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였고,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 ① '26.7월에 60만원 지급, ② '26.7월에 40만원, '26.8월에 20만원 지급, ③ '26.8월에 60만원 지급 → ①, ②, ③ 사례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60만원 지원 가능

- **다른 근로자(A)의 대체인력인 근로자(B)가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도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B)의 동료 업무분담자(C)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가능한지 여부**

- A의 대체인력 B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한 업무분담자 C는 결국 A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음
 - 따라서, 업무분담자 C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원은 제한됨
 - *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이므로, 대체인력 B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대체인력 B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정상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 관련)

지급 기준			비고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 1명당 업무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20만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			
구분	피보험자수	최대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			
- 다만,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위라벨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1.부터 4.까지 각 호의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